

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영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4924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8. 17.

발의자 : 박영선 · 김종민 · 백혜련
이춘석 · 강길부 · 이 훈
이용주 · 김성수 · 이상돈
박지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소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큰 반면에 시장 형성까지는 시간이 걸려 민간기업에서는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제조 및 연료전지관련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·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·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추가하여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).

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제4호까지의”를 “제4호까지,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제5호까지의”를 “제4호까지, 제4호의2, 제4호의3 및 제5호의”로 한다.

4의2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

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제조·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·운영

4의3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

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사업)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1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4의2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</u> <u>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</u> <u>제2조제1호에 따른 수소에너</u> <u>지의 제조·공급 및 공급망의</u> <u>건설·운영</u>
<u><신 설></u>	<u>4의3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</u> <u>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</u> <u>제2조제1호에 따른 수소에너</u> <u>지의 개발 및 수출입</u>
5. 제1호부터 <u>제4호까지의</u> 사업 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	5. ----- <u>제4호까지, 제4호</u> <u>의2 및 제4호의3의-----</u> ----- -----
6. 제1호부터 <u>제5호까지의</u> 사업 에 딸린 사업	6. ----- <u>제4호까지, 제4호</u> <u>의2, 제4호의3 및 제5호의-----</u> -----
7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